제2022-103호 2022년 10월 21일(금) 人



보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0 여수시 고시 제2022-450호 주택거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소라면 덕양리 단지형연립주택 1단지) 주택건설 시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소리면 덕양리 단지형연립주택 2단지) 0 여수시 고시 제2022-451호 0 여수시 고시 주택거설 시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소라면 덕양리 다지형연립주택 3단지) 11 제2022-452호 공 고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결과 통지 반송분 0 여수시 공고 제2022-2797호 16 공시송달 공고 0 여수시 공고 제2022-2801호 18 제26차세계한인경제인대회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ㅇ 여수시 공고 제2022-2805호 2022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사업자 공모 20 0 여수시 공고 제2022-2806호 2022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 모집 공고 31 기 타 이 여수시 조례 제1757호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이 여수시 조례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58호 51 ○ 여수시 조례 제1759호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61 이 여수시 조례 제1760호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0 여수시 조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1761호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 여수시 조례 제1762호 76 ○ 여수시 조례 제1763호 여수시 시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0 여수시 조례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64호 94 0 여수시 조례 제1765호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100 0 여수시 조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1766호 0 여수시 조례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 제1767호 106 0 여수시 조례 제1768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0 여수시 조례 제1769호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0 여수시 조례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116 제1770호 0 여수시 조례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9 제1771호 123 0 여수시 조례 제1772호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회 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63의 8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1차) 사항
 - 1. 사 업 명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단지형연립주택 (1단지)
 - 2. 사업주체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37 ㈜동행
 -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63외 8필지
 - 4. 사업개요
 - 가. 사업면적 : 2,935.0000 m²
 - 나. 건축면적 : 1,519.0730 m²
 - 다. 연 면 적 : 5,438.1736 m²
 -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주1동, 77세대
 - 5. 사업기간 : 2022. 12. . ~ 2024. 3. .
 - 6.「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라.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마.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 | 규 | 모 | | | 연장 | | | 사용 | 주요 | 최초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능 | (m) | 기점 | 종점 | 형태 | 경과지 | 결정일 | 비고 |
| 기 | 소 | 2 | 149 | 8 | 국지도 | 209 | 중로1-49 소라면 덕양리 | 소라면 덕양리 | 일반 | | 여고-64 | |
| 정 | 로 | | 5 | 0 | 로 | 209 | 1228-4 | 1436-8 | 도로 | _ | 21. 2. 5. | |
| 변 | 소 | 2 | 149 | 8 | 국지도 | 208 | 중로1-49 소라면 덕양리 | 소라면 덕양리 | 일반 | | | |
| 경 | 로 | | 5 | 0 | 로 | 200 | 1228-4 | 1436-8 | 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 소로 | - 노선연장 | - 용도폐지 분할성과 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변경 |
| 2-1495 | 2-1495 | • 기정 209m → 변경 208m | _ 용도페시 눈물성과 단당에 따른 포진연성 연경 |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52-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495) 사업
 - 나. 명칭 : 여수시 소라면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사업시행면적 : 1,820 m² → 1,828 m²
 - 나. 사업규모 : L=209m, B=8m → L=208m, B=8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동행 대표자 이 경 숙
 - 나. 주 소: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기정) `21. 2. 5. ~ `22. 12. 31. → 변경) `21. 2. 5. ~ `24.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됨.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허가민원과(061-659-409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토7 | · · · · · · · · · · · · · · · · · · · | | 지적 | 편입 | 소 유 자 | | 소유 | 권이외의 | 권리자 | |
|----|-----|---------------------------------------|--------|------------|------------|---|--------|----------|------|-----|----|
| 연번 | 돔명 | 지 번 | 지 목 | 면적 (m²) | 면적 (m²) | 주 소 | 성명 | 권리 내용 | 성명 | 주소 | 비고 |
| | 합 겨 | | | 22,258 | 1,820 | | | | | | 기정 |
| | 합 겨 | l | | 19,459 | 1,828 | | | | | | 변경 |
| | 소라면 | 1252-1 | 답 | 2,688 | 8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 | 덕양리 | 1252-1 | 답 | 2,688 | 8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2-1 | 답 | 2,169 | 12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3층(소호동) | 이경숙 | | | | 기정 |
| 2 | 덕양리 | 1262-1 | 답 | 2,169 | 1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3 | 소라면 | 1263 | 전 | 1,187 | 149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3 | 덕양리 | 1263 | 전 | 1,187 | 14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3-1 | 전 | 463 | 2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4 | 덕양리 | 1263-1 | 전 | 463 | 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3-11 | 전 | 50 | 41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5 | 덕양리 | 1263-11 | 전 | 50 | 4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6 | 소라면 | 1261 | 답 | 112 | 107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б | 덕양리 | 1261 | 답 | 112 | 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토 | 지조서 | TI | 지적 | 편입 | 소 유 자 | | 소유 | 권이외의 | 권리자 | |
|----|------------|---------|--------|------------|------------|---|--------------------------|----------|------|-----|----|
| 연번 | 돔명 | 지 번 | 지 목 | 면적 (m²) | 면적 (m²) | 주 소 | 성명 | 권리 내용 | 성명 | 주소 | 비고 |
| | 소라면 | 1260-3 | 대 | 396 | 19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60-3 | 김우심 | | | | 기정 |
| 7 | 덕양리 | 1260-3 | 대 | 396 | 19 |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33-2 여수시 국동 101주공A 111/401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71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70 | 차동열 장은희 채석은 차점덕 | | | | 변경 |
| 8 | 소라면 덕양리 | 1264 | 전 | 1,319 | 117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15 | 강내선 | | | | 기정 |
| 0 | 덕양리 | 1264-4 | 전 | 117 | 117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3층(소호동) | 이경숙 | | | | 변경 |
| 9 | 소라면 | 1225-5 | 전 | 274 | 16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9 | 덕양리 | 1225-5 | 전 | 274 | 16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0 | 소라면 | 1225-8 | 전 | 83 | 83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0 | 덕양리 | 1225-8 | 전 | 83 | 8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1 | 소라면 | 1226 | 전 | 883 | 11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 덕양리 | 1226 | 전 | 883 | 1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2 | 소라면 | 1227-1 | 전 | 3,115 | 37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2 | 덕양리 | 1227-1 | 전 | 3,192 | 39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28-4 | 대 | 98 | 7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3 | 덕양리 | 1228-4 | 대 | 98 | 7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28-8 | 대 | 42 | 22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4 | 덕양리 | 1228-8 | 대 | 42 | 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5 | 소라면 덕양리 | 1437-1 | 도 | 7,534 | 157 | | 국 (국토교통부) | | | | - |
| 16 | 소라면 덕양리 | 1436-8 | 구 | 1,895 | 156 | | 한국농어촌공사 | | | | 기정 |
| 10 | 덕양리 | 1436-18 | 구 | 221 | 146 | | 한국농어촌공사 | | | | 변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27-1외 2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1차) 사항
 - 1. 사 업 명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단지형연립주택 (2단지)
 - 2. 사업주체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37 ㈜동행
 -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27-1외 2필지
 - 4. 사업개요
 - 가. 사업면적 : 2,662.0000 m²
 - 나. 건축면적 : 1,392.9879 m²
 - 다. 연 면 적 : 5,494.0515 m²
 - 라.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주1동, 72세대
 - 5. 사업기간 : 2022. 12. . ~ 2024. 3. .
 - 6. 「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라.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마.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 | 규 | 모 | | | 연장 | | | 사용 | 주요 | 최초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능 | (m) | 기점 | 종점 | 형태 | 경과지 | 결정일 | 비고 |
| 기 | 소 | 2 | 149 | 8 | 국지도 | 209 | 중로1-49 소라면 덕양리 | 소라면 덕양리 | 일반 | | 여고-64 | |
| 정 | 로 | | 5 | 0 | 로 | 209 | 1228-4 | 1436-8 | 도로 | _ | 21. 2. 5. | |
| 변 | 소 | 2 | 149 | 8 | 국지도 | 208 | 중로1-49 소라면 덕양리 | 소라면 덕양리 | 일반 | | | |
| 경 | 로 | | 5 | 0 | 로 | 200 | 1228-4 | 1436-8 | 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 소로 | - 노선연장 | - 용도폐지 분할성과 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변경 |
| 2-1495 | 2-1495 | • 기정 209m → 변경 208m | _ 용도페시 눈물성과 단당에 따른 포진연성 연경 |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52-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495) 사업
 - 나. 명칭 : 여수시 소라면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사업시행면적 : 1,820 m² → 1,828 m²
 - 나. 사업규모 : L=209m, B=8m → L=208m, B=8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동행 대표자 이 경 숙
 - 나. 주 소: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1. 2. 5. ~ `22. 12. 31. → 변경) `21. 2. 5. ~ `24.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됨.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허가민원과(061-659-409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토7 | · · · · · · · · · · · · · · · · · · · | | 지적 | 편입 | 소 유 자 | | 소유 | 권이외의 | 권리자 | |
|----|-----|---------------------------------------|--------|------------|------------|---|--------|----------|------|-----|----|
| 연번 | 돔명 | 지 번 | 지 목 | 면적 (m²) | 면적 (m²) | 주 소 | 성명 | 권리 내용 | 성명 | 주소 | 비고 |
| | 합 겨 | | | 22,258 | 1,820 | | | | | | 기정 |
| | 합 겨 | l | | 19,459 | 1,828 | | | | | | 변경 |
| | 소라면 | 1252-1 | 답 | 2,688 | 8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 | 덕양리 | 1252-1 | 답 | 2,688 | 8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2-1 | 답 | 2,169 | 12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3층(소호동) | 이경숙 | | | | 기정 |
| 2 | 덕양리 | 1262-1 | 답 | 2,169 | 1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3 | 소라면 | 1263 | 전 | 1,187 | 149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3 | 덕양리 | 1263 | 전 | 1,187 | 14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3-1 | 전 | 463 | 2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4 | 덕양리 | 1263-1 | 전 | 463 | 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3-11 | 전 | 50 | 41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5 | 덕양리 | 1263-11 | 전 | 50 | 4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6 | 소라면 | 1261 | 답 | 112 | 107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б | 덕양리 | 1261 | 답 | 112 | 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토 | 지조서 | TI | 지적 | 편입 | 소 유 자 | | 소유 | 권이외의 | 권리자 | |
|----|------------|---------|--------|------------|------------|---|--------------------------|----------|------|-----|----|
| 연번 | 돔명 | 지 번 | 지 목 | 면적 (m²) | 면적 (m²) | 주 소 | 성명 | 권리 내용 | 성명 | 주소 | 비고 |
| | 소라면 | 1260-3 | 대 | 396 | 19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60-3 | 김우심 | | | | 기정 |
| 7 | 덕양리 | 1260-3 | 대 | 396 | 19 |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33-2 여수시 국동 101주공A 111/401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71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70 | 차동열 장은희 채석은 차점덕 | | | | 변경 |
| 8 | 소라면 덕양리 | 1264 | 전 | 1,319 | 117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15 | 강내선 | | | | 기정 |
| 0 | 덕양리 | 1264-4 | 전 | 117 | 117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3층(소호동) | 이경숙 | | | | 변경 |
| 9 | 소라면 | 1225-5 | 전 | 274 | 16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9 | 덕양리 | 1225-5 | 전 | 274 | 16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0 | 소라면 | 1225-8 | 전 | 83 | 83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0 | 덕양리 | 1225-8 | 전 | 83 | 8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1 | 소라면 | 1226 | 전 | 883 | 11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 덕양리 | 1226 | 전 | 883 | 1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2 | 소라면 | 1227-1 | 전 | 3,115 | 37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2 | 덕양리 | 1227-1 | 전 | 3,192 | 39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28-4 | 대 | 98 | 7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3 | 덕양리 | 1228-4 | 대 | 98 | 7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28-8 | 대 | 42 | 22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4 | 덕양리 | 1228-8 | 대 | 42 | 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5 | 소라면 덕양리 | 1437-1 | 도 | 7,534 | 157 | | 국 (국토교통부) | | | | - |
| 16 | 소라면 덕양리 | 1436-8 | 구 | 1,895 | 156 | | 한국농어촌공사 | | | | 기정 |
| 10 | 덕양리 | 1436-18 | 구 | 221 | 146 | | 한국농어촌공사 | | | | 변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52-1외 6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1차) 사항
 - 1. 사 업 명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단지형연립주택 (3단지)
 - 2. 사업주체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37 ㈜동행
 -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52-1외 6필지
 - 4. 사업개요
 - 가. 사업면적 : 6,453.0000 m²
 - 나. 건축면적 : 2,505.9378 m²
 - 다. 연 면 적 : 9,582.4818 m²
 - 라. 규 모: 지하1층·지상4~5층, 주4동, 120세대
 - 5. 사업기간 : 2022. 12. . ~ 2024. 3. .
 - 6. 「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라.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마.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 | 규 | 모 | | | 연장 | | | 사용 | 주요 | 최초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능 | (m) | 기점 | 종점 | 형태 | 경과지 | 결정일 | 비고 |
| 기 | 소 | 2 | 149 | 8 | 국지도 | 209 | 중로1-49 소라면 덕양리 | 소라면 덕양리 | 일반 | | 여고-64 | |
| 정 | 로 | | 5 | 0 | 로 | 209 | 1228-4 | 1436-8 | 도로 | _ | 21. 2. 5. | |
| 변 | 소 | 2 | 149 | 8 | 국지도 | 208 | 중로1-49 소라면 덕양리 | 소라면 덕양리 | 일반 | | | |
| 경 | 로 | | 5 | 0 | 로 | 200 | 1228-4 | 1436-8 | 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 소로 | - 노선연장 | - 용도폐지 분할성과 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변경 |
| 2-1495 | 2-1495 | • 기정 209m → 변경 208m | _ 용도페시 눈물성과 단당에 따른 포진연성 연경 |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52-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495) 사업
 - 나. 명칭 : 여수시 소라면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사업시행면적 : 1,820 m² → 1,828 m²
 - 나. 사업규모 : L=209m, B=8m → L=208m, B=8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동행 대표자 이 경 숙
 - 나. 주 소: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기정) `21. 2. 5. ~ `22. 12. 31. → 변경) `21. 2. 5. ~ `24.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됨.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허가민원과(061-659-409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토7 | · · · · · · · · · · · · · · · · · · · | | 지적 | 편입 | 소 유 자 | | 소유 | 권이외의 | 권리자 | |
|----|-----|---------------------------------------|--------|------------|------------|---|--------|----------|------|-----|----|
| 연번 | 돔명 | 지 번 | 지 목 | 면적 (m²) | 면적 (m²) | 주 소 | 성명 | 권리 내용 | 성명 | 주소 | 비고 |
| | 합 겨 | | | 22,258 | 1,820 | | | | | | 기정 |
| | 합 겨 | l | | 19,459 | 1,828 | | | | | | 변경 |
| | 소라면 | 1252-1 | 답 | 2,688 | 8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 | 덕양리 | 1252-1 | 답 | 2,688 | 8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2-1 | 답 | 2,169 | 12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3층(소호동) | 이경숙 | | | | 기정 |
| 2 | 덕양리 | 1262-1 | 답 | 2,169 | 1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3 | 소라면 | 1263 | 전 | 1,187 | 149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3 | 덕양리 | 1263 | 전 | 1,187 | 14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3-1 | 전 | 463 | 2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4 | 덕양리 | 1263-1 | 전 | 463 | 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63-11 | 전 | 50 | 41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5 | 덕양리 | 1263-11 | 전 | 50 | 4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6 | 소라면 | 1261 | 답 | 112 | 107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б | 덕양리 | 1261 | 답 | 112 | 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토 | 디조서 | 지 | 지적 | 편입 | 소 유 자 | | 소유 | 권이외의 | 권리자 | |
|----|------------|---------|---|------------|------------|---|--------------------------|----------|------|-----|----|
| 연번 | 돔명 | 지 번 | 목 | 면적 (m²) | 면적 (m²) | 주 소 | 성명 | 권리 내용 | 성명 | 주소 | 비고 |
| | 소라면 | 1260-3 | 대 | 396 | 19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60-3 | 김우심 | | | | 기정 |
| 7 | 덕양리 | 1260-3 | 대 | 396 | 19 |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33-2 여수시 국동 101주공A 111/401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71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70 | 차동열 장은희 채석은 차점덕 | | | | 변경 |
| 8 | 소라면 덕양리 | 1264 | 전 | 1,319 | 117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15 | 강내선 | | | | 기정 |
| 0 | 덕양리 | 1264-4 | 전 | 117 | 117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3층(소호동) | 이경숙 | | | | 변경 |
| 9 | 소라면 덕양리 | 1225-5 | 전 | 274 | 16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9 | 덕양리 | 1225-5 | 전 | 274 | 16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0 | 소라면 | 1225-8 | 전 | 83 | 83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0 | 소라면 덕양리 | 1225-8 | 전 | 83 | 8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1 | 소라면 | 1226 | 전 | 883 | 11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1 | 덕양리 | 1226 | 전 | 883 | 1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2 | 소라면 | 1227-1 | 전 | 3,115 | 376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2 | 덕양리 | 1227-1 | 전 | 3,192 | 39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28-4 | 대 | 98 | 75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3 | 덕양리 | 1228-4 | 대 | 98 | 7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 소라면 | 1228-8 | 대 | 42 | 22 | 전남 여수시 소호로 237, 1층(소호동) | ㈜동행 | | | | 기정 |
| 14 | 덕양리 | 1228-8 | 대 | 42 | 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무궁화신탁 | | | | 변경 |
| 15 | 소라면 덕양리 | 1437-1 | 도 | 7,534 | 157 | | 국 (국토교통부) | | | | _ |
| 16 | 소라면 덕양리 | 1436-8 | 구 | 1,895 | 156 | | 한국농어촌공사 | | | | 기정 |
| 10 | 덕양리 | 1436-18 | 구 | 221 | 146 | | 한국농어촌공사 | | | | 변경 |

공 시 송 달 공 고

2021년도 돌산 율림·돌산 신복·소라 대포·주삼·호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이 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 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2. 10. 20.

여 수 시 🐯

- 1. 공고대상: 13명(율림지구 2명, 신복지구 3명, 대포지구 7명, 주삼지구 1명)
- 2. 공고기간: 2022. 10. 20. ~ 2022. 11. 3. (15일간)
-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소라면·주삼동 게시판
- 4. 기타사항:「붙임조서」참조
- 5. 행정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 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문의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474,347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결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조서

| 번호 | 성명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주소 | 제작결과 | 배달결과 |
|----|-----|-------|------|-------------------------|------|------|
| 1 | 주*태 | 166-1 | 등기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길 *-* (소호동) | 제작완료 | 폐문부재 |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우리 시는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기간 동안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베트남 해외시장 진출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여 수 시 장

1. 모집 개요

○ 기 간: '22. 10. 19.(수) ~ 10. 25.(화)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개요】

- ▶일 시 : '22. 10. 28.(금) 10:30 ~ 11:30 (1시간)
- ▶장 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국제관 C동 1층 컨퍼런스홀
- ▶대 상 : 50여명(미국.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 ▶주요내용 : 미국.베트남 시장의 유망품목 및 진출시 유의사항 등
- ▶ 강 사 : (미국) 김지영(월드옥타 글로벌마케터위원회 북미담당 부위원장) (베트남) 정지훈(월드옥타 글로벌마케터위원회 동남아담당 간사)
- 대 상: 50여명(미국·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 필요서류: 참가신청서 1부
 -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에 한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구글설문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온 라 인 : (링크) https://forms.gle/MFAEuKm9SJcoap466
- 방문접수: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우편접수: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우) 59675
- 이메일 : smy486@korea.kr
- 팩 스: 061-659-5816
 - * 이메일 및 팩스 접수는 반드시 유선(☎061-659-3605)으로 접수 확인 필수
- 참가특전: '23년도 전라남도 수출지원사업 선정시 가점(1점) 부여
- 문 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심미연 주무관(☎061-659-3605)

여수시 공고 제2022 -2805호

2022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사업자 공모

여수시에서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 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 10.

여 수 시 장

I 공고개요

- □ 공 고 명 : 2022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 공고기간 : '22. 10. 20.(목) ~ 11. 4.(금) / 15일간
-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 공모자격
 -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용기주문, 회수신청·수거, 세 척 등)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업체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다회용기 제작(구입)비용 일체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Ⅱ 사업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1월 ~ 2023년 9월
 - O 추진방법: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자 공모·선정
 - O 총사업비 : 102백만원(부가세포함)
 - O 사업지역 : 여수시 일원
 - 배달 수요 높은 지역(1인가구 밀집 지역 등)
 - 사업부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택한 지역 등
 - O 보조금 및 자부담
 - 사업부서 보조금 : 102백만원(용기 회수·세척·운영비 등) 지원
 - 보조사업자 자부담 : 다회용기 제작(구입)비용 일체
- □ 사업내용
 - O 사업 참여 음식점 모집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 발굴·확보

- ① (배달음식점) 배달주문 비율이 높거나 다회용기 사용이 편리한 음식점, 본사를 통한 섭외가 원활한 프랜차이즈점 등 우선 모집
- ② (개인소비자) 배달앱·SNS 등을 이용한 홍보, 다회용기 주문 시 할인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률 제고
- O 배달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① (대여)
 - ▶ 전용 다회용기 제작·대여, 음식점에서 다회용기 요청 시 공급
 - ▶ 용기 과잉·부족 상황 대비, 음식점별 용기 보유 현황 파악

②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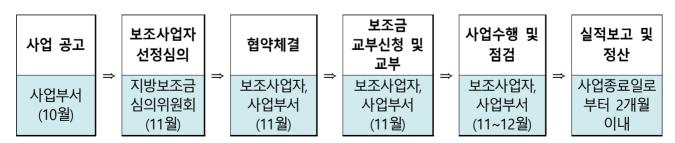
- ▶ 소비자 편리성 등을 고려한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 구축
- ▶ 자체 장비 또는 배달대행업체 등을 활용한 묶음 통합 수거 등 수거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 ▶ 소비자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신속 수거 진행
- ③ (세척 및 재공급)
 - ▶ 용기의 안정적 재공급을 위한 전용 세척허브 확보·운영
 - ▶ 식품위생법 준수 등 용기의 위생안전관리 철저
 - ▶ 원활한 다회용기 순환을 위해 음식점에 신속한 다회용기 재공급
- ④ (관리)
 - ▶ 용기 대여·반납 내역 파악 및 분실 최소화 방안 마련·시행
 - ▶ 다회용기 사용횟수 조회 등을 통한 품질 관리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개선·확대 방안 제시
 - ① (정량) 다회용기 전환에 따른 폐기물 저감량 등 분석을 통해 여수시 자원 순환 기여도(환경개선 효과) 도출
 - ② (정성) 서비스 이용 후기(만족도, 애로사항 등), 향후 다회용기 이용 의지 등 확인을 통해 사업 지속 가능성 평가

Ⅲ 제출 및 심사

- □ 제출기간 : '22. 10. 21.(금) ~ 11. 4.(금) / 15일간
- □ 제출서류
 - 1.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
 - 2. 사업계획 요약서
 - 3. 사업계획서
 - 4. 단체현황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7.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팩스 및 우편 제출 불가
 - O 접 수 : 여수시 도시미화과(☎061-659-3840)
 - O 주 소 :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국동임시별관 4층
- □ 사업심사 및 사업자 선정
 - O 심사내용 :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 선정대상 : 2개 단체 내외
 - O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류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위로 대상자 추천
 - O 선 정 : 〈여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

□ 추진일정



[붙임 1]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 명 | | | | 대표지 | } | | | |
|------------|-------------|-------------|----|------|-----|---|-----|----|
| 지원근거 | | | | | | | | |
| 사 업 명 | | | | | 통계목 | | | |
| 사업기간 | | | | | | , | | |
| 사업내용 | | 0 0 0 | | | | | | |
| 사 약 | ਜੇ ਸੀ | | 처으 | 당해사업 | 시비 | | 천원(| %) |
| /'Γ 1 | ∄ "I | | 천원 | 총사업비 | 자부담 | | 천원(| %) |
| | 주 소 | | | | | | | |
| 단 체 연락처 | 연락처 | | | | | | | |
| | 시므키 | 직 위 | | | 성명 | | | |
| | 실무자 | 연락처 | | | | | | |

□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 임: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현황 등

사 업 계 획 요 약 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 | 단체 명 | | | | | | | | |
|---------------------|---|------|-----|--------------|------|----------|------|-----|----|
| 단 체 현 황 | 등록기관 | | 등록 | - 일 | | | | | |
| | 상근직원수 | В | | 금년도 (단위 : | | | | | |
| | 사 업 명 | | | 사업기 | | | | | |
| | 사업목적 | | | | | | | |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단위 : 천원) | 계 | 지원신 | 청액 | 자부명 | } | 자부담비 | 율(% | 6) |
| / 34 | 사업대상 | | | | | | | | |
| | 사업효과 | 0 | | | | | | | |
| 사 업 내 용 | 0 0 0 | | | | | | | | |
| 사 업 비 산출내역 | | | | | | | | | |
| 최 근 공익활동 추진실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사진,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 | | | | | |
| 전년도 | 사 업 명 | | | | | | | | |
| 보조사업 | 사업비 | 천원 1 | 보조금 | | 천원 자 | 부 담 | 천 | 원(| %) |
| 실 적 | 사업효과 | | | | | | | |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총괄)

※ 반드시 1메(Page)로 작성
보조 종류 : 민간경상사업보조

| 단체명 |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
| 사업기간 | | | | 사업 | 지역 | | | |
| 사업대상 | | | | 대상 (실인 | | | | |
| 사업목적 | | | | | ' | | | |
| | 세부사 | 업명 | | | 죾 | 요 내 | 용 | |
| 사업내 용 | | | | | | | | |
| 71 日 11 0 | | | | | | | | |
| | | | | | | | | |
| 예 산 | 총사업비 | | 천운 | 보조금]청금액 | | 천원 | 자부담 | 천원 |
| | ואאוו | 쳔 | [원 | 건비 : | 천원 (| %) | | |
| 신청금액 | 사업비 | | % | 보비 : 차비 : | 천원 (천원 (| %) %) | 등 주요 비목 기 | 입 |
| (보조금)의 세부내역 | 단 체 | 찬 | [원 | 건비 : 공요금 : | | %) (%) | | |
| | 운영비 | | % | 용비 : 동비 : | | %) %) | | |

| | 사업계획 (사업목적, 추진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1. | 신청 사업명: (신규, 계속사업) |
| | |
| | |
| 2. | 사업목적 |
| | 0 |
| | 0 |
| 2 | 가 시 초 기 비 비 |
| ა. | 사업추진방법 ○ |
| | 0 |
| | |
| 4. | 세부사업 추진계획 |
| | ○ 사업추진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장 소 : |
| | ○ 성 조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
| | ○ 홍보방법 : 일간지 게시 회, 인터넷 포털 홍보, 초청장 발송, 책자배부 |
| | ○ 강사초청 강의 : 회 |
| | 0 |
| 5 | 사업의 기대효과 |
| U.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 | 사회적 기여도 |
| | ○ 지역경제 활성화 |
| |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 | |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단위 : 천원)

| 단 위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
| | 합 계 | | | | |
| | | 계 | | | |
| | 자부담 | | | | |
| | | | | | |
| ○○ 사업 | |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 | | | | |
|----------------------------|---------------|----------------|------|----------|------|--------|----------------|
| 대표자명 | | | 실 | 구책임자 | 2 | 직위 성망 | Ħ _O |
| 사무실 주소 | | | | 연락처 |] | | |
| 창립년월일 | | | | 회 원 수 | • | | - 80 |
| 설립형태 | | \\ | 근법인(|), 등록단체 | () | | |
| 상근직원수 | | 명(예 :사무: | 처장 O | 명, 총무 0명 | 병, 긴 | 난사 O명) | |
| 설립목적 | | | | | | | |
| | 직 위 | 성명 | | 전화번호 | | 임기 | 비고 |
| 7 7 (A) A) | 회 장 | | | | | | |
| 조직(임원) | 부회장 | | | | | | |
| ※현 회장 : 대 | 총 무 | | | | | | |
| | 간 사 | | | | | | |
| નો જો દ્રીનો | 연도별 | 수 입 | 7 | 지 출 | | 잔 액 | 비고 |
| 재정상태 (단위 : 만원) | 전년도 | | | | | | |
| (যান কমা) | 당해년도 | | | | | | |
| 시군지회 현황 | 개 소: 총회원수: | , 명(여수시에 한혈 | | , | , | , | |
| 내년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 | | | | | |

※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총회 회의록 등)

[붙임 2]

선정 배점표(지방보조금 사업 검토 시 배점 기준)

| 평가분야 | |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 | | | | | |
|-----------------------|--------------------|--------------|---|------|--|--|--|----|-------|---|---|----|
| | | | 계 | 100 | | | | | | | | |
| | | | 소 계 | 30 | | | | | | | | |
| 사업능력 평가 | 정량적 | 사업수행 경 험 | o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평가 | 10 | | | | | | | | |
| (사업 수행능력 | 평가 (30점) | 전문인력 투입현황 | ㅇ 사업 수행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15 | | | | | | | | |
| 평가서) | | 경영상태 | o 신용등급 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 5 | | | | | | | | |
| | 정성적 평가 (70점) | | 소 계 | 70 | | | | | | | | |
| | | | | | | | | | | 과 업 이 해 도 | o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o 추진 목표 및 제안 요청 항목 반영도 | 10 |
| | | 과 업 수행능력 | o 참여인력 전문성 및 사업기반 구축 정도 o 유사사업 수행성과, 사업운영 및 관리 효율성 | 15 | | | | | | | | |
| 사업실행 역량 (사업 | | | | | | | | 평가 | 실현가능성 | o 사업 홍보 및 참여 음식점 모집 o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 15 | |
| 제안서) | | 세 부 운영계획 | o 세부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o 수행절차의 타당성 및 신뢰성 | 20 | | | | | | | | |
| | | 지속가능성 | o 향후 참여음식점 및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확대 방안 | 10 | | | | | | | | |
| | 가점 (+10점) | 우수기업 등 | ㅇ 약자 및 우수기업,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 등 | +10 | | | | | | | | |

2022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시업」여행참기자 모집

관광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의 여행참 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여 수 시 장

1 사업 개요

○ 기 간: 2022. 9. ~ 12.

○ 대 상 : 관내 여행사 및 여수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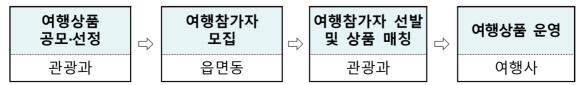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기준 적용

▶ **장 애 인** : 지체(휠체어 이동자),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 위계층 해당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O 내 용

- 전남 도내 위주 당일 여행상품 1인당 150천원 이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150천원 이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상품을 여행참가자가 선택
- O 추진절차



2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2. 10. 21.(금) ~ 10. 31.(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이내

O 여행기간 : 2022. 11. 3.(목) ~ 12. 4.(일)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여수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 | 저소득층 |
|------|--|---------------------|
| 모집인원 | 300명(보호자 포함) | 1,100명 |
| 신청자격 | 지체(휠체어 이동자),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 상기 장애유형 4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신청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만 신청(단 법정 대리인 동의서 제출)

O 신청내용: 7개 여행상품 중 1개 선택하여 신청

| 구분 | 상품명 | 여행일자 | 방문지 |
|------------------|---------------------------|--|-----------|
| | ① 바다, 섬 그리고 여수 | 11/3 | 여수 |
| 장애인 | U 19, B 292 81 | 11/24 | 011 |
| (2) | ② 걷기 좋은 담양 여행! | 11/3 ~ 12/4 (월요일 제외) | 담양 |
| | ③ 행복여행 목포/신안, 1004대교·퍼플섬 | 11/7,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2, 11/23 | 목포, 신안 |
| 저소 득층 | ④ 죽녹원의 대나무 치유와 공연에 반하다!!! | 11/7,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2, 11/23 | 담양, 곡성 |
| (5) | ⑤ 곡성상상열차여행 | 11/8 | 고서 |
| | 항 극성성실자여행 | 11/29 | 곡성 |
| | ⑥ 눈이 즐거운 보성 여행! | 11/3 ~ 12/4 (월요일 제외) | 보성 |
| | ⑦ 항구의 도시 목포 여행! | 11/3 ~ 12/4 (월요일 제외) | 목포 |

※ 여행일정표 첨부 [붙임1]

※ 접수상황에 따라 여행일자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여행일정이 최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기관·협회 ☞ 임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서식3-1) ~ (서식3-9) 참 ?

| | 개 인 | 단 체 |
|----------------|---|---|
| 본인신청 (공통) | ①참가신청서 ②본인 신분증(본인확인) ③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④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⑤예치금 납부 동의서 ⑥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①참가신청서 ②대표자 신분증(본인확인) ③사용인감계 ④인감증명서 ⑤신청자 명단 ⑥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해당 시) ⑦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⑧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대리신청 (추가제출) | ①위임장 ⑧신청자 신분증 사본 ⑨대리인 신분증(본인확인) | ⑩단체장 위임장 ⑪단체장 신분증 사본 ⑫대리인 신분증(본인확인) ⑬재직증명서 |

- ※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단체·기관·협회 소속 직원 동행 필수(당해 사업비로 여행경비 지원 불가)

○ 여행참가자 선정 및 여행상품 매칭

- (1차) 모집인원 초과 시, <u>신청 선착순 선정</u>
- (2차) 탈락 명단자 중 신청 선착순 <u>예비인원 15% 별도 선정 및 매칭</u>
 - 장애인이 동반자 없이 신청 또는 선정 후 여행 취소하는 경우, 충원
 - 참가자(예비인원 포함)와 여행상품 매칭 후 여행사별 명단 송부
 - 개인 및 기관 단체 협회에 문자, 공문 통해 개별 안내
- 결과 발표 : 2022. 11. 2.(수)/ 유선연락 또는 카카오톡 통보

4 유의사항

- O 버스 등 이동수단은 휠체어 전용차량이 아님
- 지체(휠체어 이동자) 장애인은 여행활동 시 휠체어로 이동
- 참가자 및 동반자 <u>예치금(1인당 1만원)</u> 있음※ 참가자 확정 후 여행사 계좌로 납부하며, 여행종료 5일 이내 예치금 환급
- O 여행출발 최소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일정변경 및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 O 여행 후 참가자 설문조사 참여
- O 여행상품 타인양도 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O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 필요시 자가검사키트 검사 실시 후 탑승)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상품 개시 연기 및 운영 중단 가능
- O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광과 관광진흥팀(☎061-659-38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행일정표 각 1부.
 - 2. 관련 서식 9종 [서식 3-1] ~ [서식 3-9] 각 1부. 끝.

붙임 1

여행일정표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일정표

| ① [장애인] 바다, 섬 그리고 여수 | | | | | | | | | |
|--|--------------------------|-------------|--|---|---|--|--|--|--|
| 날 짜 | 지 역 | 교 통 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식 사 | | | | |
| 11/3 11/24 | 여 수 | 전용버스 | 09:30 10:00 11:30 12:30 14:00 15:00 15:40 16:10 16:40 | 여수시청 집결 및 모임인원 점검, 이동 아쿠아플라넷 관람 이동 중식 브릿지 및 조발도 무장애 투어 마술공연 민속놀이체험 포토타임 및 설문조사 이동 및 석식, 해산 | 중식 : 함박스테이크& 디저트 석식 : 삼겹살정식 | | | | |
| ② [장(|) 이] 건 | 기 좋은 담영 | 뱟 여행! | | | | | | |
| 날 짜 | 지역 | 교통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식 사 | | | | |
| 11/3 ~ 12/4 (월요일 제외) | 여 수 담 양 여 수 | 전용버스 | 08:00 09:40 11:00 12:30 13:30 15:00 16:30 17:30 |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집결 후 담양 이동 딜라이트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중식 메타프로방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석식 여수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귀가 | 중식 : 대통밥 석식 : 돼지갈비 | | | | |
| ③ [저= | 소득층] | 행복여행 목 | 포/신안, | 1004대교·퍼플섬 | | | | | |
| 날 짜 | 지 역 | 교 통 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식 사 | | | | |
| 11/7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2 11/23 | 여 수 목 포 신 안 여 수 | 전용버스 | 08:30 09:00 10:40 12:30 13:30 14:00 14:30 16:00 16:40 17:50 | 여수시청앞 전문인솔가이드 미팅 여수시청~신안1004대교 경유, 퍼플섬 이동 ▶퍼플섬. 반월도 . 박지도 관람 중식 퍼플섬~1004대교 이동 ▶1004대교 촬영 1004대교~해상케이블카 이동 ▶해상케이블카 탑승후 유달산조망 및 다도해조망 고하도주차장~ 여수 이동 여수시청 앞 도착 및 해산 | 중식 : 낙지볶음 석식 : 민어회 | | | | |

| ④ [저= | ④ [저소득층] 죽녹원의 대나무 치유와 공연에 반하다!!! | | | | |
|--|----------------------------------|-------|--|---|-------------------------|
| 날 짜 | 지 역 | 교 통 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식 사 |
| 11/7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2 11/23 | 여 수 당 성 수 | 전용버스 | 09:00 09:30 10:30 11:00 12:00 12:30 13:30 14:00 15:50 17:20 | 여수시청앞 미팅(전문인솔가이드) 여수시청~메타세콰이어길 이동 ▶메타세콰이어길 힐링 메타세콰이어길 ~ 죽림원이동 ▶죽림원 숲치유 및 산아지 판굿(토요일공연) 관람 중식 식당~곡성기차마을 이동 ▶곡성기차 타기 체험 곡성기차마을~여수이동 여수시청앞도착및해산 | 중식 : 대통밥 석식 : 돼지숯불길비 |

| ⑤ [저소 | ⑤ [저소득층] 곡성상상열차여행 | | | | | | | |
|---------------|--------------------|-------|---|---|-----------|---|---|--------------------------------|
| 날 짜 | 지 역 | 교 통 편 | 시 간 | 세 | 부 | 일 | 정 | 식 사 |
| 11/8 11/29 | 여 수 곡 여 수 | 전용버스 | 09:30 11:00 12:00 13:00 14:00 14:30 15:00 16:00 17:00 | 행사집결지 모임 스카이워크 체 중식 출렁다리 체험 짚라인 체험 이동 천문대(하늘나 이동 및 설문을 석식, 해산 | 험 라 별자 | | | 중식 : 돈가스정식 석식 : 삼겹살정식 |

| ⑥ [저= | ⑥ [저소득층] 눈이 즐거운 보성 여행! | | | | | | | | | |
|----------------------------------|------------------------|-------|---|--|----------------------|---|---|----|---|--------------|
| 날 짜 | 지 역 | 교 통 편 | 시 간 | 세 | 부 | 일 | 정 | | 식 | 사 |
| 11/3 ~ 12/4 (월요일 제외) | 여 수 보 성 여 수 | 전용버스 | 08:00 09:00 10:00 12:30 14:00 15:00 16:00 17:00 18:00 | 여수시외버스터 득량역 추억의 제암산 자연휴의 중식 대한다원보성녹 비봉공룡알 화석 비봉공룡공원 석식 여수시외버스터 | 거리 냙림 차밭 ¦지 | | | 이동 | | 녹차정식 게장정식 |

| ① [저소 | ⑦ [저소득층] 항구의 도시 목포 여행! | | | | | |
|----------------------------------|------------------------|-------|--|--|----------------------------------|--|
| 날 짜 | 지 역 | 교 통 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식 사 | |
| 11/3 ~ 12/4 (월요일 제외) | 여 수 목 포 여 수 | 전용버스 | 08:00 10:00 11:00 12:00 13:00 15:00 16:00 17:00 |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집결 후 목포 이동 유달산 트래킹 뉴문마리나 요트투어 중식 자연사 작물관 갓바위투어 석식 여수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귀가 | 중식 : 낙지볶음 석식 : 낙지탕탕이비빔밥 | |

[서

식 3-1]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참가 신청서(개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대 | 상구분 | □ 기초생활수급자 □ ㅊ | 가상위 | | | | |
| 휴대폰 | | | 이메일 | | | | |
| * | 장애 | □ 지체(휠체어 이동자) □ 시각 | □ 발달 | □ 청각 | | | |
| 장 애 | 유형 | ※ 중복 선택 가능 | | | | | |
| 인만 | 동반자 성명 | | 신청자와의 | □ 가족 □ 친구 | | | |
| 작 | 됐자 윈동록 | | 관계 | │□ 지인 □ 기타 | | | |
| 성 | 변 | ※ 신청서 제출 후 변경 불가, 여행자보험 | 험 가입 위해 인적시 | h항 필요 | | | |
| | | □ [장애인] 바다, 섬 그리고 여수 : [○] □ [장애인] 걷기 좋은 담양 여행! : [| 담양 (11/3~12/4, | | | | |
| | 희망 낭문지 | □ [저소득층] 행복여행 목포/신안, 1004대교·퍼플섬 : 목포, 신안 (11/7, 11/14~11/19, 11/22, 11/23) | | | | | |
| | , _ · 사전 | □ [저소득층] 죽녹원의 대나무 치유와 공연에 반하다! : 담양, 곡성 (11/7, 11/14~11/19, 11/22, 11/23) | | | | | |
| | 지난 조사 | □ [저소득층] 곡성상상열차여행 : 곡성 (11/8, 11/29) | | | | | |
| | • | □ [저소득층] 눈이 즐거운 보성 여행! : 보성 (11/3~12/4, 월요일 제외) □ [저소득층] 항구의 도시 목포 여행! : 목포 (11/3~12/4, 월요일 제외) | | | | | |
| | | ○ [시고극증] 8구의 도시 극도 어형: . 극도 (11/3~12/4, 필요를 제외) ※ '여행상품 사전조사'는 추후 실제 여행상품 연계와 달라질 수 있음 | | | | | |
| _ | | | | | | | |
| = | 이사항 | ※ 상품 지원시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특이식단, 질환명, 알레르기 등) ※ 상품 상담 보조 필요 시, 소통 가능한 보호자 성명 및 휴대폰 번호 ※ 휠체어 이동자의 경우, 휠체어 정보 기재(전동/수동) | | | | | |
| 제출 서류 | | | | | | | |
| 장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 애 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 | | | | |
| | | - 동의서[서식 3-2] | .nll | | | | |
| | | -집·이용·위탁 동의서(신청자 및 동 이 시킬된기 아느 거이\[김시 2 4] | 반자 각 1부)[서· | 식 3-3] | | | |
| 위임장(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서식 3-4] | | | | | | |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월일신청자 성명(서명)

예치금 납부 동의서

| 대상자 | (zili 4 ól d | N . | , |
|---------------------|---------------|------------|-------|
| - 성 명: | (생년월약 | 台 ; |) |
| - 휴대폰 : | | | |
|) 동 반 자 🛚 💥 | 장애인만 작성하며 분 | 동반자가 있는 | 경우 작성 |
| - 성 명: | (생년월약 | 일: |) |
|) 환급받을 계좌 | ※ 여행활동 참가 | 완료 후 | |
| 예금주명 (참가자 본인 명의) | 은행명 | 계 | 좌번호 |

- 1. 본인은 추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여행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의미로 예치금 (참가자, 동반자 1인당 1만원)를 여행사에 납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예치금은 여행활동 참가 완료 후 5일 이내 환급받습니다.
- 3.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여행 출발 3일 전(시범운영 상품은 5일 전) 취소 시에는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미 이용 시에도 예치금을 반납 받을 수 없습니다.
- 4.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사가 동의해야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월일신청자 성명(서명)

[서식 3-3]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가신청자 및 동반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위탁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탁 및 제공 동의서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 여행참가 지원자 인적정보 확인, 여행참가자 선정 및 여행프로그램 운영 | 모집 시작일부터 |
|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 어행삼가자 신성 및 어행프도그램 문영 관련 이용(여행자보험 가입) 등 | <u>′23.12.31.</u>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행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위탁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
| 사업참여 여행사 | 여행참가 지원자 인적정보 확인, 여행참가자 선정 및 여행상품 지원 관련 (여행자보험 가입)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 <u>모집 시작일부터</u> ' <u>23.12.31.</u>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행 참가와 관련하여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 목적 | 보유기간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나기즈 미 괴괴취아게초 하이 | 모집 시작일부터 |
| 장애인,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 전남거주 및 관광취약계층 확인 | <u>′23.12.31.</u>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행 참가와 관련하여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저소득층 여부, 장애유형 등 | 여행참가 지원자 인적정보 확인, 여행참가자 선정 및 여행프로그램 | 모집 시작일부터 |
| | 운영 관련 이용 등 | <u>′23.12.31.</u>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행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22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4]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가 신청 위임장

| 위임하 는 사 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위임받는 사람 과 의 관 계 | 연 락 처 |
| 위임받는 사 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위임하는 사람 과 의 관 계 | 연 락 처 |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참가 신청서(단체)

| 단체명 | | | 대표자명 | | | | | |
|--|-----------------------|--|--|--|--|--|--|--|
| 3 | 주 소 | | 전화번호 이메일 | | | | | |
| 대리인 | |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 | |
| 여형 | 행 인솔자 | ○ 성 명: | ○ 생년월일 : <u>.</u> | | | | | |
| 신 | l청인원 | <u> </u> | | | | | | |
| ※장애인만 | 장애 유형 | □ 지체(휠체어 이동자)명 □ 발달명 | □ 시각명 □ 청각명 | | | | | |
| 입 | • | ※ 중복 선택 가능 | | | | | | |
| | 동반자 | □ 있음 □ 없음 | 동반자 인원 | | | | | |
| 작 성 | 유무 | ※ 신청서 제출 후 변경 불가 | ※ 동반자가 있는 경우만 작성 | | | | | |
| Ė, | 희망 항문지 사전 조사 | | 담양 (11/3~12/4, 월요일 제외) 1004대교·퍼플섬 14~11/19, 11/22, 11/23) 2 와 공연에 반하다! /14~11/19, 11/22, 11/23) 곡성 (11/8, 11/29) 행!: 보성 (11/3~12/4, 월요일 제외) 행!: 목포 (11/3~12/4, 월요일 제외) | | | | | |
| 특이사항 | | | | | | | | |
| 제출 서류 | | | | | | | | |
| 위임장 [서식 3-6], 재직증명서, 신분증 ※ 단체 담당자에게 위임 시 | | | | | | | | |
| 사용인감계(법인 인감증명서로 날인시 생략) [서식 3-7], 인감증명서 | | | | | | | | |
| | 자 명단 [| | | | | | | |
| | | ! 대리인 동의서 [서식 3-9] 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 이 기세시 조대기 | | | | | |
| | | | | | | | | |
| /H~L | !성보 수십 | · 이용 · 위탁 동의서(신청자 및 동반 | [사 각 1부) [서식 3-3] | | | | |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전**

참가 신청 위임장 (단체)

| | 성 | | 명 | | 생년월일 | |
|-----|-----|-----|------|------------------|---------|--|
| 대표자 | 주 | | 소 | | | |
| | 단 | 체 | 명 | | 연 락 처 | |
| | 성 | | 명 | | 생년월일 | |
| 대리인 | 주 | | 소 | | | |
| | 단 | 체 | 명 | | 연 락 처 | |
| | ※ 위 | 임받는 | : 사릳 | r은 '단체 업무 담당자' (| 인적사항 기재 | |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상기 인을 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법인 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합니다.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2022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 인적사항 |
|------|------------------|
| | 단 체 명 : 주 소 : |
|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

- 신청자 정보가 미흡할 경우, 여행상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니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 관련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번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 비고 |
|----|---------|----|----------------|---------------|----|
| 1 | (ex)홍길동 | | 000000-0000000 | 010-0000-0000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 (장애인 단체)

- 신청자 정보가 미흡할 경우, 여행상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니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 관련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 | l.i.e. | 성 | 주민등록 | + | 장애 휠체어 | | 동반자(1명) | | | | E OLU TI |
|--------|--------|---|--------------------|-------------------|-------------------------|-----------|---------|-----|--------------------|-------------------------|---|
| 연 번 | 성명 | 별 | 번호 | 휴대폰 | 유형 | | 여부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관계 | 특이사항 |
| 1 | 홍길동 | 남 | 000000- 0000000 | 010-0000 -0000 | 지체, 시각, 발달, 청각 | 전동 휠체어 | O,× | 홍길동 | 000000- 0000000 | 가족, 친구, 지인, 기타 | 특이식단 |
| 2 | 000 | | | | | 수동 휠체어 | | | | | 상품상담 시 동반자(000) 의 보조 필요 (000-0000-0 |
| 3 | 000 | | | | | | | | | | 알레르기 등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bigcirc | 미성년자 성명 : | | |
|------------|--------------|-------|---|
| \bigcirc | 도로명 주소: | | |
| \bigcirc | 법정 대리인 성 명: | (관계 : |) |
| \bigcirc | 법정 대리인 연락처 : | | |

상기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여행사의 부주의 또는 여행 방문시설의 이상이 아닌 미성년자의 부주 의로 인한 사고 시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동의 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이 월 3/ 일

여수시 조례 제1757호

붙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지역의 5개 읍·면·동에"를 "관할지역의 읍·면·동에"로 한다.

제8조제9항 단서 중 "주민 의견 등"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 의견"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선정
- 2. 나머지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제1호의 인원을 뺀 범 위 안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선정

제9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안 혀 행 제4조(설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5개 ----- 관합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 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sim 8 (생 $| M8조(위원의 선정) (1) \sim (8) (현행)$ 략) 과 같음)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 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 읍·면·동장이 정한다. 의견 등을 -----① (생략) (D)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신 설>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 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일 현 재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해당 읍·면·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sim ③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sim ③ (생 략)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연임할 수 없다.

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제8조제2 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을 우선 선정 2. 나머지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주 민자치회 정수에서 제1호의 인원을 뺀 범위 안에서 제8조제1항 각 호 의 비율에 따라 선정

(현행과 같음)

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 월 기 일

여수시장/100



여수시 조례 제1758호

붙임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이 된다.
 - 1.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 지역의 특산품 등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③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 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 3. 여수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 4. 최근 3년간 생산액, 공급액 및 매출액
 -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7. 여수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 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 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로 인 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생산한 농산물
-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 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 8. 여수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 9. 여수시 소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4조(답례품의 종류)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1. 여수시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 2. 여수사랑상품권 등 여수시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 2. 제3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 한다.
 -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 2. 고향사랑 기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내
 -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
-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향 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④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워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 ⑤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 1. 여수시 부시장
 - 2.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 3.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금 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
 -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 다. 그 밖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 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8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 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기금의 결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 2.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여수시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전에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여수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여수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여수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 ④ 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문변호 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 월 2/ 일

여수시장 305기에 연수

여수시 조례 제1759호

붙임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증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2.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 4. 시의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무료법률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자문 및 상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위촉기가 내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대리 및 수행을 기피할 때
 - 3.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기피할 때
 -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 5. 수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 6. 그 밖에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은 구두(口頭), 전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 ②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무업무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실적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

- 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 된 소송
- 2. 시가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
 -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 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부시장, 법무업무 담당국장, 해당 소송부서국장, 시의원 2명, 대학교

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학교수는 법학·행정학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⑥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 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계약에 의하며, 착수금, 성공보수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 ③ 성공보수는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난이도와 소가를 고려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착수금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제12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에 공개할 수 있다.
 -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여수시 조례 제1760호

붙임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60호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외대상)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3조(지원대상 및 | 범위)① | 제3조(지원 | 대상 및 | 범위)① |
| ②지원신청일 및 종업원은 여 ² 이 되어 있어야 | 수시에 주민등록 하며, | ②<삭 | 제> | |
| 제도조(이라나전)① | | 게디ㅈ(이카 | H 저\① | |
| 제5조(이차보전)① | | 제5조(이차 | 모신(네) | |
| 상공인이 금융기 | | | | |
| 자율 중 연 <u>3파</u> 해당하는 금액 c | | | | <u>5퍼센트</u> - |
| | | | | |
| | | | | |
| | | | | |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 |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 |
| 46333 | 담배 도매업 | | | |
| 40333 |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 |
| 40410 40417 3 | 모피제품 도매업 | | | |
| 46416, 46417 중 |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 |
| 64 | 금융업 | | |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부동산업 | | | |
| | · | | | |
|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 | | |
| |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 |
| |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 | | |
| 68 |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 | | |
|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 | | |
| |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 | |
|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 | | |
| |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 | | | |
| | 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 |
| 731 | 수의업 | | |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 | | |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 보건업 |
| 86 |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12 중 |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 9012 ਨ |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 |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
| 기타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
| |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 월 거 일

여 수 시 장 씨기 978



여수시 조례 제1761호

붙임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회(Exhibition)"를 "전시회·이벤트 (Exhibition&Event)"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회의"를 "국내외 마이스"로, "회의 및 전시회"을 "마이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혅 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 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 업"이라 한다)이란 회의 (Meeting) · 인센티브여행 (Incentive Travel) · 컨벤션 (Convention) · 전시회 (Exhibition) 산업과 이와 융합하 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4.(생 략)
- 5. <신 설>

② (생 략)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 의 및 전시회를 유치·개최함으로 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 산(자체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다

아 정 개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 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 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 · 인센티브여행(Incentive Travel)
- · 컨벤션(Convention) · 전시회·이 벤트(Exhibition&Event)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 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4.(현행과 같음)
- 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 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 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 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 주관 단체가 관내에 마이스를 유치·개 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산(자체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 ① ~ ③(생략 : 현행과 같음)

[제7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 ① ~ ③(생략 :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 현 행 | 개 정 안 |
|--|--|
|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여수시 사무의 민간위</u> <u>탁촉진 및 관리 조례」</u> 에 따른 다. |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여수시 사무의 민간위</u> <u>탁 기본 조례」</u> 에 따른다. |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u>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 |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 월 게 일

여수시장제기

여수시 조례 제1762호

붙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1부.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여수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 다.
-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 3. "기증"이란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 4. "기탁"이란 시가 제8조에 따라 수집하여 한시적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작품 수집 등

제3조(수집 대상) ①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한 시각 예술작품으로서 예술적·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정체성

- 을 확립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
- ② 여수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작품으로 한다.
- 제4조(작품의 수집)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에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작품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 절차)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및 관리전 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작품 수집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 제6조(경매구입) ① 시장은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수집 작품 제안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 찰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경매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작품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 ② 기증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작품기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작품 기탁)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기탁작품보관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소장품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분과(작품추천분과, 수증심의분과, 감정평가분과)로 운영한다.
 - ② 작품추천분과와 수증심의분과 위원은 중복 위촉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10조(작품추천분과 및 수증심의분과) ① 작품추천분과(이하 "추천분과"라 한다)는 수집 대상 작품의 구입여부를 심의한다.
 - ② 수증심의분과(이하 "심의분과"라 한다)는 수집 대상작품을 기증받고 자 하는 경우에 소장가치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추천분과와 심의분과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추천분과와 심의분과는 수집제안작품목록 및 심의의결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정평가분과) ① 감정평가분과는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의 진위여부 및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감정평가분과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감정평가분과는 작품매입가격 또는 보험가액에 관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공립 미술관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3회 이상 있 는 사람
 - 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

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감정평가분과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작품 수집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임기 중 수집 작품과 연관된 경우
 - 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

- 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심의에서 회피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 하여 수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 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작품의 관리 등

- 제17조(작품관리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집한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작품출납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② 관리관은 작품의 수집·관리·수리·복원·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작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작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18조(작품의 관리) ① 시장은 작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품을 수장고(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수집된 작품에 대하여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보험가입) 시장은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품매도신청서

| 인적 | 주소 | | | | | 전화 | | |
|----|-------------|-------|--------------|--------|----|--------------|----|------------|
| 사항 | 성명 | |] [일 | | | 이메일 | | |
| | 매 도 신 청 작 품 | | | | | | | |
| 부문 | 작가명 | 작 품 명 | 제작연도 (시대) | 재료 및 기 | 기법 | 규격 (세로×가) | 로) | 매도희망 가격 |
| | | | | | | | | |

※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 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1쪽)

수집 작품 제안서

| | □ 평면 | | | | □ 미디 □ 기타 | • | | | | |
|-------------------|--------------------|--|--------|----------|--------------|-------------------|----------|------|-------|---|
| 부 문 | □ 입 체 : □ 부 조 : | 작품표면 두께 10cm 조각, 설치, 공예 등 작품표면 두께 10cm 사진, 영화, 영상 등 | 이상 | | | | | | | |
| | | 한글 | 1 112 | //6 | <u> </u> | | 1110 | | | |
| | | 영문 | | | 호 | | | | | |
| 작 가 (Artist) | 출생 연도 | 사망 | 연도 | | 국 | 적 | X | 성별 | 남ㆍ여 | |
| (TH tibt) | 현주소 | | | | | | | | | |
| | 연 락 처 | | | | E- | mail | | | | |
| 작 품 명 | 한글 | | | 영 | 문(원어) | | | | | |
| 제작년도 | | | | | | | | | | |
| 제작재료 | | | | | | | ※최대학 | · 자시 | 하게 기- | 록 |
| 소 장 자 | □ 작가 | | □ 개인 | | | [| □ 단체(기관) |) | | |
| 작품규격 | 평면: | | 서 | 메로× | 가로cm | 에디션 | . / | | | |
| প্তাপ | 입체: | | 고 | 들이 X | 세로×가. | 로cm, ³ | 무게 | | | g |
| 액자/좌대 | 평면: | | 서 | l로× | 가로cm | | | | | |
| 포함규격 | 입체: | | 고 고 | <u></u> | 세로×가. | 로cm, - | 무게 | | | g |
| 가 격 | 조사가격 | | | | 소장자희 | 망가격 | | | | |
| // ' ' | 12/1/19 | 산출근거 | | | 구매예정 | 가격 | | | | |
| 부대비용 | 운송비 🗆 | 미술관 | | |]술관 기기 | | 작품수복비 | | | |
| | 부 담 🗆 | 소장자 | 부담 [| <u>소</u> | <u>:</u> 장자 | | (예상) | | | _ |

위 작품을 경매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작품 세부내역 및 제안사유

| 7). X 2). eij | | | | 샹호 | □ 보통 | □ 훼손 | 내용 | | | |
|---------------|------|-----|----|----|--------|------------|-----------|------|------|-----|
| 작품상태 | 수복여 | 이력 | | 없음 | □ 있음 | 일자 | 내용 | | | |
| 서 명 | 내용 | | | | | | | | | |
| (signature) | 위치 | | 작품 | 전면 | □좌 / □ |]우 작품후 | -면 □좌 / □ |]우 [| 기타 | |
| | 이름(역 | 업체) | | | | | 작가와 관계 | | | |
| 저작권자 | 연락기 | 처 | | | | | E-mail | | | |
| | 주소 | | | | | T | T | | | |
| | 번호 | 소기 | 앙자 | 소 | :장년도 | ※소장방법 | | 주소 및 | 연락처 | |
| | 1 | | | | ~ | 가격: | 주소: | 전 | 화: | |
| 소장이력 | 2 | | | | ~ | 가격: | 주소: | 전 | 화: | |
| | 3 | 3 | | ~ | 가격: | 주소: 전화: | | | | |
| | 일시 | | | | | | | | | |
| 전시 및 | 및 | | | | | | | | | |
| 수상경력 | 내용 | | | | | | | | | |
| | 저ス | 라명 | | | 서 적 | 명 | 출판사 | 발행년드 | 돈 쪽수 | 출판지 |
| 출판물 | | | | | | | | | | |
| 수록이력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사유 | | | | | | | | | | |

(3쪽)

□ 작품사진

| ① 전면 | |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세부 |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기증 등 신청서

| | (□ 기증 | □ 기탁 | □ 물품소관의 | 전환) |
|--|-------|------|---------|-----|
|--|-------|------|---------|-----|

| 부 문 | □ 평면□ 입체□ 부조 | | 디어 타 | | |
|-----------------|--|----------|------------|---------|-------|
| 7] →] | 이 름 한글 | | 한자 | | |
| | 영문 | | 호 | | |
| 작 가 (Artist) | 출생 연도 사망 | 연도 | 국적 | 성별 | 남・여 |
| | 현 주 소 | | | | |
| | 연 락 처 | | E-mail | | |
| 작 품 명 | 한글 | 영문(원어 |) | | |
| 제작년도 | | 기탁기간 | | | |
| 제작재료 | | | | ※최대한 자서 | 하게 기록 |
| 작품규격 | 평면: | 세로×가로cn | n 에디션 | / | |
| 45114 | 입체: | 높이×세로× | 가로cm, 무게 | | g |
| 액자/좌대 | 평면: | 세로×가로cn | n | | |
| 포함규격 | 입체: | 높이×세로× | 가로cm, 무게 | | g |
| 작품상태 | □양호 □보통 □ | 훼손 내용 | | | |
| 7 6 8 91 | 수복이력 □없음 □있음 일 | 자 내용 | | | |
| 2) гн | 내용 | | | | |
| 서 명 | 위치 작품전면 □ 좌/ □ |] 우 작품후면 | □ 좌/ □ 우 | □기타 | |
| | 성명 | 생년월일 |] | 성별(님 | · 여) |
| 소장자 | 주소 - | | | | |
| | 전화 후 | 구대폰 | E-mai 1 | | |
| 가 격 | | 산출근거 | | | |

위 작품을 기증 · 기탁 · 물품소관의 전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성명 | (인) |
|----|-----|
| | |

여수시장 귀하

작품기증서

기증번호:

| 7] | 성 명 | 생년월일 |
|------------------|------------|------------|
| 중 | 연 락 처 | E-mail |
| 자 | 주 소 | |
| | 작 가 | 기증일자 |
| | 제 목 | 크 기 |
| | 기 법 | 제 작 년 도 |
| 기 증 작 품 | 작 품 사 진 | |

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기탁작품보관증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 기 탁 | 연 락 처 | | | | E-mail | | | |
| ¬ 자 | 주 소 | | | | | | | |
| | 기탁기간 | | | | | ※ 정확하게 | 일자를 기재 | |
| | 작 가 명 | 작 품 | 명 | 규 격 | 제작년도 | 기 법 | 비고 | |
| | | | | | | | | |
| 작 품 | | | | | | | | |
| 내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عا | 27 m | | <u>'</u> | 저작권자 | | | |
| | 4 | 품명 | 성 명 | | 연립 | 가 처 | | |
| | | | | 주소: | | | | |
| | | | | - | Te | el: | | |
| 저 | | | | 주소: | | | | |
| 작 | | | | 주소: | Te | el: | | |
| 권 | | | | Tel: | | | | |
| | | | | 주소: | 10 | <u></u> | | |
| | | | | | Te | el: | | |
| | | | | 주소: | | | | |
| | | | | | Te | el: | | |

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 월 게 일

여수시장에 >>>>

여수시 조례 제1763호

붙임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63호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사업 등) ① | 제5조(사업 등) ① |
| 2 | ② |
| ③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자 지정은 공 |
| | 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
| |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
| |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
| | 조례』에 따른다. |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회복지 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 월 게 일

여수시장 에이

여수시 조례 제1764호

붙임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64호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9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10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여수시의회 의원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담당과장
 -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 | <u><삭 제></u> |
| 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및 지 | |
| 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 |
|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 처 | |
| 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 (이하 | |
| " 지원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
|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
| 을 자문한다. | |
| 1.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 |
| 관한 사항 | |
| 2. 제10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
|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 |
|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 |
| ③ 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 |
| 위하여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 | |
| 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 | |
| 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 | |
| <u>능을 대행한다.</u> | |
| <u><신 설></u> |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 |
| | 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 |
| | 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
| | 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이 |
| |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심의한다. |
| | 1.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에 관한 사항
- 2. 제9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의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10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 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 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 1. 여수시의회 의원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담당과장
-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u>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u> <u>체</u>
 -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 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 런 시민단체

| |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
|---------------------------------|--------------------------------------|
| |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
| | 있는 사람 |
| | ⑥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 |
| | 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
| | 률』에 따른다. |
| <u>제12조</u> ~ <u>제14조</u> (생 략) | <u>제13조</u> ~ <u>제15조</u> (현행 제12조부터 |
| | 제14조까지와 같음) |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한국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월 / 일

여수시장에

여수시 조례 제1765호

붙임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 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 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 4.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 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 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 시설 및 사업) ①"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지원
-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 4. 여수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5.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
- 7.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 월 게 일

여수시장제기의

여수시 조례 제1766호

붙임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안 |
|--|---|
|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 제16조(존속기한)한은 <u>2022.12.31.</u> 까지로 한다 <u>2027.12.31.</u> | |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2022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ㅇ 월 게 일

여수시장 200

여수시 조례 제1767호

붙임 여수시 2022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 1부.

여수시 2022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2022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 월 세 일

여수시장 200 1200

여수시 조례 제1768호

붙임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 나.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이전 각종 인·허가와 심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 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 설>

개 정 아

1. ~ 3. (현행과 같음)

4.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 (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 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 리업(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제 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2 호의 자원순화관련시설 및 제 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 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기존 부지 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 지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 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 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 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부지 경 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 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 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용 예외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 용 예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4호 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 치하는 경우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 ス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영 자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0월 게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769호

붙임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69호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공영차고지는 여수시 신월로 319(신월동)에 두며, 명칭은 "신월동 공영차고지"라 칭한다.'를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한다.

1. 신월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2. 화장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화장동 780-7번지

부 칙

신 · 구조문대비표

| 개 정 안 |
|--|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
|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월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2. 화장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화장동 780-7번지 |
| |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월 게 일

여 수 시 장 2057 700 100

여수시 조례 제1770호

붙임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 방 교육
-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 남용 예방 교육
-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 대한 교육
-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여수시보 또는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연 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이 월 게 일

여 수 시 장 7~~~) >>> (1)

여수시 조례 제1771호

붙임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다.
-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 자단체를 말한다.
-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여수시 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 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 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7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①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자연순 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유공자 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기 지원한 보조금 및 지원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월 게 일

여수시장기가장연수

여수시 조례 제1772호

붙임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 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 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